

## 醫療技士法全文

今般通過된 바 있는 醫療技士法 全文을 紹介합니다. 會員의 參考가 되시기 바랍니다.

▲第1條（目的）이法은 醫師·齒科醫師의 指示 및 監督하에 診療, 또는 醫化學의 檢查에 從事하는 者 (以下『醫療技士』라 한다)의 資格·免許 등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保健 및 醫療向上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醫療技士의 種別）醫療技士의 種別은 臨床病理士·放射線士·物理治療士·作業治療士·齒科技工士 및 齒科衛生士로 한다.

▲第3條（醫療技士別 業務範圍등）醫療技士의 種別에 따르는 業務의 範圍와 限界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免許）①醫療技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로서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種別에 따르는 醫療技士 國家試驗 (以下『國家試驗』이라 한다)에 合格한 後 保健社會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1, 取得하고자 하는 免許에 相應하는 保健醫療에 관한 學問을 專攻하는 初級大學以上의 學校를 卒業한者.

2, 專門學校, 또는 初級大學以上의 教育課程을 履修한 者로서 保健社會部長官이 定하는 保健機關, 또는 醫療機關에서 取得하고자 하는 免許에 相應하는 保健醫療業務를 1年以上 修習한 者.

3, 高等學校 以上의 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이와 同等以上의 資格이 있다고 文敎部長官이 認定하는 者로서 保健社會部長官이 指定하는 保健機關 또는 醫療機關에서 取得하고자 하는 免許에 相應하는 保健醫療業務를 3年以上 修習한 者.

4, 保健社會部長官이 認定하는 外國의 第1號 및 同等以上의 教育課程을 履修한 者.

5, 保健社會部長官이 認定하는 外國의 該當 醫療技士의 免許를 받은 者.

②第1項 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保健機關 또는 醫療機關의 指定과 保健醫療業務에 關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5條（缺格事由）다음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 대하여는 醫療技士의 免許를 하지 아니한다.

1, 精神病者·心身薄弱者.

2, 농者·아者·병者.

3, 禁治產者·限定治產者·破產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醫療技士로서 不適當한 不具廢疾者, 또는 麻藥, 其他毒毒物質의 中毒者.

5, 금고이상의 刑을 받고 그刑의 執行이 終了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되지 아니한 者.

▲第6條（國家試驗）國家試驗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每年 1回以上 保健社會部長官이 이를 實施한다.

▲第7條（應試資格의 制限등）①第5條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②不正한 方法으로 國家試驗에 應試한 者 또는 國家試驗에 關하여 不正行爲를 한 者에 대하여는 그受驗을 停止시키거나 合格을 無効로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驗이 停止되거나 合格이 無効로 된 者는 그後 2回에 한하여 第6條의 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第8條（免許의 登錄）①保健社會部長官은 醫療技士의 免許를 할 때에는 醫療技士의 種別에 따르는 免許台帳에 그免許에 關한 事項을 登錄하고 免許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②免許의 登錄과 免許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9條（秘密漏泄의 禁止）醫療技士는 이法

또는 다른 法令에 特히 規定된 경우를 除外하고  
는 그業務上 知得한 他人의 秘密을 漏泄하지 못  
한다.

▲第10條 (申告) 醫療技士는 大統領令이 定하  
는 바에 의하여 每年 그 實態의 就業狀況을 保健  
社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1條 (無免許者の 業務禁止 등) ①이 法에  
의 한 醫療技士가 아니면 醫療技士의 業務를 行하  
지 못한다. 다만 第4條 第1項 第2號 및 第3號  
의 規定에 의하여 保健社會部長官이 指定하는 保健  
機關 또는 醫療機關에서 修習中에 있는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이 法에 의한 醫療技士가 아니면 醫療技士의  
名稱 또는 이와類사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12條 (免許의 取消 등) ①保健社會部長官은  
醫療技士가 다음 각號의 1에 該當한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한다.

1, 第5條第1號내지第4號에 該當하게 된 때.

2, 금고이상의 刑을 받은 때.

3, 免許證을 貸與한 때.

4, 第1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停止處分  
期間中에 醫療技士의 業務를 行하거나 3回以上  
資格停止處分을 받은 때.

②醫療技士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免許가  
取消된 후 그處分의 原因이 된 事由가 消滅하거나  
改悛의 情이 顯著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保健社會  
部長官은 그 免許證을 再交付할 수 있다.

▲第13條 (就業의 停止) ① 保健社會部長官은  
醫療技士가 甚히 그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하  
거나 그 免許 또는 業務에 관하여 廣告行爲를 하  
거나 正當한 事由 없이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申  
告를 繼續하여 3回以上 하지아니한 때에는 大統  
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一定한 期間 就業을  
停止시킬 수 있다.

② 第1項의 品位損傷行爲의 範圍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4條 (權限의 委任) 保健社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15節 (罰則) 第9條 第11條 第1項 本文  
또는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者 또는 醫療技士의  
免許證을 貸與한者는 3年以下の 懲役 또는 50만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第9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에 대하여는 告訴가 있어야 論하다.

▲第16條 (同前) 第10條의 規定에 違反한者는  
10만원 以上의 罰金에 處한다.

▲第17條 (兩罰規定)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  
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其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15條 또는 第  
16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處罰하  
는 外에 그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18條 (施行令)이 法을 公布後 6月이 經過한 날  
로부터 施行한다.

####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後 6月이 經過한 날  
로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臨床床理士·エ스線士·齒科技士·物理治  
療士·作業治療士 또는 齒科衛生士의 免許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該當醫療技士의 免許를 받은 것  
으로 본다.

③ (同前)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의하  
여 衛生士 또는 衛生試驗士의 免許를 받은 者는  
따로 그에관한 法令이 制定될 때까지 從前의 醫療  
補助員法의 規定에 依하여 그 効力を 가진다.

④ (폐지법률) 醫療補助員法은 이 法施行日에  
이를 폐지한다. (끝)